

□ 심사지침 제2장 검사료

현행				개정		
연번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1	<u>나56-1 태반알파 마이크로글로불린-1, 너-14 인슐린양성장인자결합단백-1 검사</u>	조기 양막파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u>나56-1 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1 검사, 너-14 인슐린양성장인자결합단백-1 검사</u> 인정여부	분만진통을 동반하지 않은 조기 양막파수(PROM)시 일차적으로 <u>나-733 니트라진 검사</u> 를 시행하고, 임상적으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u>나56-1 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1 검사</u> 또는 <u>너-14 인슐린양성장인자결합단백-1 검사</u> 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u>나56-1 태반알파 마이크로글로불린-1 검사</u> 또는 <u>너-14 인슐린양성장인자결합단백-1 검사</u> 는 이차적으로 시행 시 인정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u>누571 조기양막파수검사</u>	조기 양막파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u>누571가 조기양막파수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인슐린양성장인자결합단백질-1, 누571가 조기양막파수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1</u> 인정여부	분만진통을 동반하지 않은 조기 양막파수(PROM)시 일차적으로 <u>나-733 니트라진 검사</u> 를 시행하고, 임상적으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u>누571가 조기양막파수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인슐린양성장인자결합단백질-1</u> 또는 <u>누571가 조기양막파수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1</u> 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u>누571가 조기양막파수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인슐린양성장인자결합단백질-1</u> 또는 <u>누571가 조기양막파수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1</u> 은 이차적으로 시행 시 인정함.
2	<u>나-151 출혈시간, 나-152 응고시간, 나-153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 시간, 나-154 프로트롬빈시간</u>	<u>나-151 출혈시간, 나-153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 시간, 나-154 프로트롬빈시간</u> 검사와	출혈성질환을 선별하거나 출혈성경향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하는 응고검사(<u>나-151 출혈시간, 나-152 응고시간, 나-153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 시간, 나-154 프로트롬빈시간</u>) 중	<u>누100 응고기능기본검사</u>	<u>누100가 응고기능기본검사-출혈시간, 누100다 응고기능기본검사-프로트롬빈시간, 누</u>	출혈성질환을 선별하거나 출혈성경향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하는 응고검사(<u>누100가 응고기능기본검사-출혈시간, 누100나 응고기능기본검사-응고시간, 누100다 응고기능기본검사-</u>

현행				개정		
연번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트롬빈시간 검사	동시 시행된 나-152 응고시간검사 인정여부	<p>나-152 응고시간 검사와 나-153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 검사는 내인계 혈액 응고과정이상에 대한 선별검사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검사 실시 목적이 동일함.</p> <p>또한, 나-152 응고시간 검사는 통상 출혈성질환의 선별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출혈성경향이 있는 환자의 응급수술 전 선별검사로 일부 필요하나 재현성 및 민감도가 낮아 유용성이 떨어짐.</p> <p>따라서, 나-151 출혈시간, 나-152 응고시간, 나-153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 나-154 프로트롬빈시간을 동시 시행된 경우 나-152 응고시간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p>		100라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 검사와 동시 시행된 누100나 응고기능기본검사-응고시간검사 인정여부	<p>프로트롬빈시간, 누100라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중 누100나 응고기능기본검사-응고시간과 누100라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은 내인계 혈액 응고과정이상에 대한 선별검사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검사 실시 목적이 동일함.</p> <p>또한, 누100나 응고기능기본검사-응고시간은 통상 출혈성질환의 선별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출혈성경향이 있는 환자의 응급수술 전 선별검사로 일부 필요하나 재현성 및 민감도가 낮아 유용성이 떨어짐.</p> <p>따라서, 누100가 응고기능기본검사-출혈시간, 누100나 응고기능기본검사-응고시간, 누100다 응고기능기본검사-프로트롬빈시간, 누100라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을 동시 시행한 경우 누100나 응고기능기본검사-응고시간은 인정하지 아니함.</p>

현행				개정		
연번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3	<u>나-153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 시간 검사</u>	비경구 헤파린 투여시 추적관찰을 위해 시행하는 <u>나-153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 시간 검사</u> 의 인정횟수	심부정맥혈전증 등 상병에 비경구 헤파린 투여(heparinization) 시 추적관찰을 위해 시행하는 <u>나-153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 시간 검사</u> 는 헤파린 투여 후 6시간 간격으로 실시하므로, 1일 4회 인정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u>누100라 응고기능 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 시간</u>	비경구 헤파린 투여시 추적관찰을 위해 시행하는 <u>누100라 응고기능 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 시간</u> 의 인정횟수	심부정맥혈전증 등 상병에 비경구 헤파린 투여(heparinization) 시 추적관찰을 위해 시행하는 <u>누100라 응고기능 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 시간</u> 은 헤파린 투여 후 6시간 간격으로 실시하므로, 1일 4회 인정함.
4	<u>나226 보체정량 [C₃¹⁾, C₄²⁾, C_{5a}³⁾, C₂⁴⁾, C₅⁵⁾, C₉⁶⁾ 등⁷⁾ 각각]</u>	Allergy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u>보체정량검사</u> 인정여부	<u>나226 보체정량</u> 검사는 자가면역질환의 진단 및 질병의 정도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이나, 면역복합체(Immune complex)에 의해 유발된 Allergic 질환에서도 보체계의 활성화로 인해 C ₃ , C ₄ level의 변화가 초래되므로 Allergy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u>C₃, C₄ 보체정량</u> 검사는 인정한다.	<u>누747 보체정량 [정밀면역검사]</u>	Allergy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u>누747 보체정량 [정밀면역검사]</u> 검사 인정여부	<u>누747 보체정량 [정밀면역검사]</u> 검사는 자가면역질환의 진단 및 질병의 정도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이나, 면역복합체(Immune complex)에 의해 유발된 Allergic 질환에서도 보체계의 활성화로 인해 C ₃ , C ₄ level의 변화가 초래되므로 Allergy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u>보체정량 [정밀면역검사]</u> -일반 C ₃ , C ₄ 는 인정함.
5	<u>나228 면역글로불린정량검사</u>	전립선염에 전립선액으로 실시한 <u>면역글로불린정량</u> 검사 인정여부	전립선염에 전립선액으로 실시한 <u>나228 면역글로불린정량</u> 검사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u>아니한다</u> .	<u>누741 면역글로불린(정량)</u>	전립선염에 전립선액으로 실시한 <u>누741 면역글로불린(정량)</u> 인정여부	전립선염에 전립선액으로 실시한 <u>누741 면역글로불린(정량)</u> 은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u>아니함</u> .

현행				개정		
연번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6	<u>나235 세룰로프라즈민</u>	암 상병에 <u>세룰로프라즈민, 중급속 검사 인정여부</u>	암(Cancer) 상병에 <u>나235 세룰로프라즈민검사 또는 나452 중급속검사</u> 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u>아니한다.</u>	<u>누470 특수미량단백[정밀면역검사], 누550 중급속·미량원소</u>	암 상병에 <u>누470 특수미량단백[정밀면역검사]-세룰로프라즈민, 누550 중급속·미량원소 인정여부</u>	암(Cancer) 상병에 <u>누470 특수미량단백[정밀면역검사]-세룰로프라즈민 또는 누550 중급속·미량원소 검사</u> 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u>아니함.</u>
7	<u>나-326 에스트라디올, 나-348 황체형성호르몬, 나-350 난포자극호르몬</u>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에 2~3종 동시 시행한 호르몬검사의 인정기준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장에서 난소의 기능과 에스트로겐의 분비는 수년 동안 등락을 거듭하므로 한 시점에서 에스트로겐 측정으로 난소의 기능을 판정하기는 부정확하며, 폐경 이행기에 혈중 난소자극호르몬(FSH)의 증가조건이 일정하게 나타나므로 폐경 진단에 유용한 검사는 <u>나-350 난포자극호르몬 검사</u> 임. 따라서, 일률적으로 호르몬검사를 2종(<u>나-350 난포자극호르몬 FSH, 나-326 에스트라디올 E2</u>) 혹은 3종(<u>나-350 난포자극호르몬 FSH, 나-326 에스트라디올 E2, 나-348 황체형성호르몬 LH</u>)을 산정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심사함.	<u>누370 성선자극 호르몬, 누371 성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u>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에 2~3종 동시 시행한 호르몬검사의 인정기준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장에서 난소의 기능과 에스트로겐의 분비는 수년 동안 등락을 거듭하므로 한 시점에서 에스트로겐 측정으로 난소의 기능을 판정하기는 부정확하며, 폐경 이행기에 혈중 난소자극호르몬(FSH)의 증가조건이 일정하게 나타나므로 폐경 진단에 유용한 검사는 <u>누370나 성선자극 호르몬-정밀면역검사-난포자극호르몬 FSH</u> 임. 따라서, 일률적으로 호르몬검사를 2종 (<u>누370나 성선자극 호르몬-정밀면역검사-난포자극호르몬 FSH, 누371 성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에스트라디올 E2</u>) 혹은 3종(<u>누370나 성선자극 호르몬-정밀면역검사-난포자극 호르몬 FSH, 누370나 성선자극 호르</u>

현행				개정		
연번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가. 폐경 진단 시에는 난포자극호르몬 검사만 인정하고 조기 폐경인 경우 에스트라디올 검사를 추가 인정함.</p> <p>나. 첫 1회 검사로 진단이 확실치 않은 경우 1회 추가 인정하나, 일반적으로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이미 폐경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p> <p>다. 황체형성호르몬은 폐경의 진단 및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황체형성호르몬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p> <p>라. 폐경 진단 후 호르몬치료 중에 난포자극호르몬 검사는 의미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p> <p>마. 안면홍조 등의 폐경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에스트로겐의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에스트라디올 검사는 사례별로 인정함.</p> <p>(2011.3.1. 진료분부터 적용)</p>			<p>몬-정밀면역검사-황체형성호르몬 LH, 누371 성선히르몬-정밀면역검사-에스트라디올 E2) 을 산정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심사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가. 폐경 진단 시에는 난포자극호르몬 검사만 인정하고 조기 폐경인 경우 에스트라디올 검사를 추가 인정함.</p> <p>나. 첫 1회 검사로 진단이 확실치 않은 경우 1회 추가 인정하나, 일반적으로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이미 폐경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p> <p>다. 황체형성호르몬은 폐경의 진단 및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황체형성호르몬 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p> <p>라. 폐경 진단 후 호르몬치료 중에 난포자극호르몬 검사는 의미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p> <p>마. 안면홍조 등의 폐경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에스트로겐의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에스트라디올 검사</p>

현행				개정		
연번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는 사례별로 인정함.
8	나407 미생물(항산균 제외)배양, 동정, 약제 감수성 검사	나407 미생물(항산균 제외)배양, 동정, 약제 감수성 검사의 각 검체별 내역	<p>나407 미생물(항산균 제외)배양, 동정, 약제감수성검사의 각 검체별 내역</p> <p>- 다 음 -</p> <p>가. 구강, 기도, 호흡기 검체 : 구강내 검체, 객담, 인후 및 인두배양, 기관지경 검사법에 의한 검체 등</p> <p>나. 소화기 검체 : 담즙, 위액 등</p> <p>다. 비뇨기, 생식기 검체 : 소변, 자궁경관 및 내막검체, 질염증 검체, 성호선액 등</p> <p>라. 혈액, 체액(천자액 포함) : 혈액, 골수, 척수액, 늑막액, 관절낭액 등</p> <p>마. 기타 부위 검체 : 연부조직 농배양 등</p>	<삭제>	<삭제>	<p><삭제></p> <p>※분류개편으로 검체구분 삭제됨</p>
9	나467 진균항체	라텍스응집법으로 실시한 <u>Canditec test</u>	칸디다의 감염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Canditec test는 정확한 역가를 판정하기 위해 1:2, 1:4, 1:8로 희석하여 Latex응집법으로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므로 <u>나467가 진균항체검사(일반) 1회로 인정한다.</u>	누622 <u>진균항체(균종별)</u>	라텍스응집법으로 실시한 <u>Canditec test</u> 인정기준	칸디다의 감염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Canditec test는 정확한 역가를 판정하기 위해 1:2, 1:4, 1:8로 희석하여 Latex응집법으로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므로 <u>누622가 진균항체(균종별)-일반면역검사 1회로 인정함.</u>

현행				개정		
연번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10	<u>나486 A형간염항체</u>	혈 우 병 환 자 에 게 screening으로 실시한 <u>HAV-IgG, IgM Ab</u> 검사 인정 여부 및 인정시 실시간격	항혈우인자는 혈액제제로서 제조과정상 A형 간염바이러스는 불활성화가 안되므로 항혈우인자를 투여받는 혈우병환자는 A형 간염의 고위험군임에는 분명하나, 모든 혈우병환자에게 A형 간염을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정기적인 screening test로 A형 간염검사를 실시함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A형 간염백신 투여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항체가 형성되는바, 혈우병환자로 처음 진단(또는 등록)시 항체유무확인을 위해 실시한 <u>HAV-IgG, IgM Ab</u> 검사는 혈우병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회 인정하고, 간염백신 투여후 항체생성여부 확인을 위한 동 검사는 인정하지 <u>안</u> 한다.	<u>누701 정밀면역검사</u>	혈 우 병 환 자 에 게 screening으로 실시한 <u>누701가 정밀면역검사-A형간염항체-IgG, 누701가 정밀면역검사-A형간염항체-IgM</u> 검사 인정여부 및 인정시 실시간격	항혈우인자는 혈액제제로서 제조과정상 A형 간염바이러스는 불활성화가 안되므로 항혈우인자를 투여받는 혈우병환자는 A형 간염의 고위험군임에는 분명하나, 모든 혈우병환자에게 A형 간염을 의심할 만한 임상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정기적인 screening test로 A형 간염검사를 실시함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A형 간염백신 투여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항체가 형성되는바, 혈우병환자로 처음 진단(또는 등록)시 항체유무확인을 위해 실시한 <u>누701가 정밀면역검사-A형간염항체-IgG, 누701가 정밀면역검사-A형간염항체-IgM</u> 은 혈우병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회 인정하고, 간염백신 투여후 항체생성여부 확인을 위한 동 검사는 인정하지 <u>아니</u> 함.
11	<u>나550 병리조직검사</u>	악성종양수술 관련 <u>해부병리조직검사</u> 수가산정방법	제9장 수술 및 치료 분류항목에 의거하여 “림프절 청소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술항목의 경우, 악	<u>나560 조직병리검사</u>	악성종양수술 관련 <u>조직병리검사</u> 수가산정방법	제9장 수술 및 치료 분류항목에 의거하여 “림프절 청소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술항목의 경우, 악성

현행				개정		
연번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성종양상병으로 실제로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여 수술을 시행 했을 때에는 <u>나550다(1) 병리조직검사-악성종양 수술의 경우-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경우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한다.</u>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종양상병으로 실제로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여 수술을 시행 했을 때에도 악성종양수술과 림프절 청소술의 블록수를 합하여 <u>나560라 조직병리검사[1장기당]- Level D</u> 의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함.
12		간우엽절제술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에 대한 <u>해부병리조직검사</u>	간우엽절제술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의 수기료는 주된 수술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간, 담낭에 실시한 <u>나550 해부병리조직검사는 각각 인정한다.</u>		간우엽절제술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에 대한 <u>조직병리검사 인정기준</u>	간우엽절제술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의 수기료는 주된 수술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간, 담낭에 실시한 <u>나560 조직병리검사는 조직병리검사 세부사항에 따라 각각 인정함.</u>
13	<u>나487 C형간염항체</u>	항바이러스제 투여 결정을 위한 관련 검사 등의 적정 시행시기에 대한 적용기준	항바이러스제 <u>치료시 HCV-RNA 검사 등 관련 검사결과 확인 후 치료여부 및 기간을 정하게 되며, 약제투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검사는 적절한 시기 내에서 시행되는 것이 원칙</u> 이므로, 통상 약제투여 전 6개월 이내 시행한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심사 적용함.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u>누700마 -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 누701아-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 누703가-웨스턴블롯-C형간염항체</u>	항바이러스제 투여 결정을 위한 관련 검사 등의 적정 시행시기에 대한 적용기준	항바이러스제 <u>치료시 관련 검사결과 확인 후 치료여부 및 기간을 정하게 되며, 약제투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검사는 적절한 시기 내에서 시행되는 것이 원칙</u> 이므로, 통상 약제투여 전 6개월 이내 시행한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심사 적용함.

현행				개정		
연번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14	<u>너-441 GAD (Glutamic Acid Decarboxylase Antibody) 항체검사</u>	당뇨병에 시행하는 <u>너-441 GAD (Glutamic Acid Decarboxylase Antibody) 항체검</u> <u>산 인정여부</u>	<u>너-441 GAD(Glutamic Acid Decarboxylase Antibody) 항체검사</u> 는 일반적으로 당뇨병 진단 시 제1형 또는 제2형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향후 치료에 대한 예후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이며, 당뇨로 처음 진단된 환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가. 제1형 당뇨병이 의심되는 경우(30대 중반 이전의 비교적 젊은 연령, 제1형 당뇨병의 가족력, 자가면역 질환, 마른 체형 등) 나. 제2형 당뇨병으로 판단되어 경구 혈당강하제를 투여 중인 환자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3~5년)내에 인슐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등 제1형 당뇨병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는 경우 (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u>누803 GAD항체 [정밀면역검사]</u>	당뇨병에 시행하는 <u>누803 GAD항체 [정밀면역검사]</u> 인정여부	<u>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u> 는 일반적으로 당뇨병 진단 시 제1형 또는 제2형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향후 치료에 대한 예후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이며, 당뇨로 처음 진단된 환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가. 제1형 당뇨병이 의심되는 경우(30대 중반 이전의 비교적 젊은 연령, 제1형 당뇨병의 가족력, 자가면역 질환, 마른 체형 등) 나. 제2형 당뇨병으로 판단되어 경구혈당강하제를 투여 중인 환자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3~5년)내에 인슐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등 제1형 당뇨병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는 경우